의안번호	2211976
의 뢰 인	최은석 의원
회 답 일	2025. 8. 22.
추계번호	25A425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속세 세율 조정 ·배우자 상속재산 및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재산의 비과세 및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Ⅰ. 비용추계 결과

❑ 상속세 세율 등을 조정함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는 2026년 3조 5,356억원, 2030년 5조 7,671억원 등 2026년에서 2030년까지 5년간 총 26조 6,042억원(연평균 5조 3,208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 개정안은 배우자 상속재산 비과세 및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를 포함하고 있으나,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자료 등의 부재로 추계가 불가능함

○ 이를 고려할 경우 전체적인 재정수입 감소는 제시된 금액과 다를 수 있음

[표 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상속세 및 증여세

(단위: 억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누적	연평균
배우자 상속재산 비과세 (안 12조 등)		추	정	곤	란		
상속세 세율 조정 (안 제26조)	−30,426	−51,098	−51,098	−51,098	−51,098	−234,818	−46,964
배우자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비과세(안 제46조 등)	−4,930	−6,573	−6,573	−6,573	−6,573	−31,224	−6,245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안 제63조제3항)		추	정	곤	란		
합 계	−35,356	−57,671	−57,671	−57,671	−57,671	−266,042	−53,208

주: 1. 현행 증여세 세율은 상속세 세율을 준용하도록 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되어 있어 상속세 세율 조정 시 증여세도 자동으로 연동
2. 2026년 세수효과는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기한 반영하여 상속세 6/12, 증여세 9/12 적용하여 산정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2조(비과세 되는 상속재산)	○ 배우자의 실제 상속받은 재산을 비과세 상속재산에 추가	
2	안 제13조제1항(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외	

<table>
<tr><td>3</td><td>안 제14조제1항(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td><td>○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진 증여채무</td><td></td></tr>
<tr><td>4</td><td>안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td><td>○ 배우자상속공제 규정 삭제
– 현행: 5억원~30억원</td><td></td></tr>
<tr><td>5</td><td>안 제21조제2항(일괄공제)</td><td>○ 일괄공제 적용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의 공제적용 규정 삭제</td><td></td></tr>
<tr><td>6</td><td>안 제26조
(상속세 세율)</td><td><table><tr><th>과세표준</th><th>세율</th></tr><tr><td>～1억원 이하</td><td>10%</td></tr><tr><td>1억원 초과～5억원 이하</td><td>20%</td></tr><tr><td>5억원 초과～10억원 이하</td><td>30%</td></tr><tr><td>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td><td>40%</td></tr><tr><td>30억초과 ～</td><td>50%</td></tr></table>→<table><tr><th>과세표준</th><th>세율</th></tr><tr><td>～1억원 이하</td><td>10%</td></tr><tr><td>1억원 초과～30억원 이하</td><td>20%</td></tr><tr><td>30억원 초과 ～</td><td>30%</td></tr></table></td><td></td></tr>
<tr><td>7</td><td>안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td><td>○ 상속인 양도재산 증여추정 규정에서 배우자 삭제</td><td></td></tr>
<tr><td>8</td><td>안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td><td>○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비과세 증여재산에 추가</td><td></td></tr>
<tr><td>9</td><td>안 제47조제3항(증여세 과세가액)</td><td>○ 배우자 간의 부담부증여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td><td></td></tr>
<tr><td>10</td><td>안 제53조(증여재산 공제)</td><td>○ 배우자 증여공제 삭제
– 현행 6억원</td><td></td></tr>
<tr><td>11</td><td>안 제63조제3항
(유가증권 등의 평가)</td><td>○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등의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 현행: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 평가액의 20% 가산</td><td></td></tr>
</table>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12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	○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13조제1항 (상속세 과세가액)	×	○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14조제1항(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	○ 미대상 – 배우자 상속세 비과세에 수반되는 규정 조정

3	안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	○ 미대상 – 배우자 상속세 비과세에 수반되는 규정 조정
4	안 제21조제2항(일괄공제)	×	○ 미대상 – 배우자 상속세 비과세에 수반되는 규정 조정
5	안 제26조 (상속세 세율)	○	
6	안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	○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7	안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및 안 제47조제3항 (증여세 과세가액)	○	
8	안 제53조(증여재산 공제)	×	○ 미대상 – 배우자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비과세에 수반되는 규정 조정
9	안 제63조제3항 (유가증권 등의 평가)	×	○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의 부칙에 따라 동 법안은 2026년부터 시행된다는 전제하에 세수효과는 2026년에서 2030년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

○ 세수효과는 상속세 신고기한(6개월) 및 증여세 신고기한(3개월)을 감안하여 2026년부터 발생한다고 가정

○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

❑ 향후 상속세 세율 조정조정에 따른 세수 감소액은 다음과 같은 가정으로 추계

○ 향후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대상 가정

– 상속세 과세대상 피상속인수는 최근 5년간 전체 피상속인수의 증감추세가 일정하지 않아 과세가 된 피상속인수의 연평균 비중(4.8%)을 적용하여 산정한 과세대상 피상속인(16,173명)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

– 증여세 과세대상 증여건수는 최근 5년간(특이치 제외) 전체 증여건수의 증감추세가 일정하지 않아 과세된 증여건수의 연평균 비중(37.3%)을 적용하여 산정한 과세대상 증여건수(190,958건)가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

○ 향후 상속 및 증여재산규모의 과세표준별 과세대상자 가정

- 상속 및 증여재산규모 과세표준별 과세대상자는 최근 5년간 상속재산규모 과세표준별 과세대상자 비중의 증감추세가 일정하지 않아 과세대상 연평균 비중으로 가정

○ 향후 상속 및 증여재산규모별 1인당 과세표준액 가정

- 최근 5년간 상속 및 증여재산규모별 1인당 과세표준액의 증감이 일정하지 않아 각 규모별 평균 과세표준액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

○ 향후 상속 및 증여재산규모별 1인당 세액공제액 가정

- 상속세의 세액공제는 증여세액공제(상속재산에 가산된 증여재산의 기납부증여세) 및 신고세액공제만 발생한다고 가정

  * 증여세액공제는 상속재산규모별 최근 5년간 1인당 증여세액공제세액(증여세액공제액/건수) 연평균 공제액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

  * 신고세액공제는 추정된 1인당 산출세액과 세액공제 등을 반영한 값에 공제율(3%)을 적용하여 산정한 공제액으로 가정하며, 이는 세수효과 추정시 직접 적용

  * 단기재상속 세액공제 및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적용대상자가 매우 미미하여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

- 증여세의 세액공제는 납부세액공제(증여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기납부증여세) 및 신고세액공제만 발생한다고 가정

  * 납부세액공제는 증여재산규모별 최근 5년간 1인당 납부세액공제세액(납부세액공제액/건수) 연평균 공제액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1)]

  * 신고세액공제는 추정된 1인당 산출세액과 세액공제 등을 반영한 값에 공제율(3%)을 적용하여 산정한 공제액으로 가정하며, 이는 세수효과 추정시 직접 적용

  *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적용대상자가 매우 미미하여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

❑ 향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 비과세의 세수 감소액은 다음과 같은 가정으로 추계

○ 배우자의 증여재산의 증감추세가 일정하지 않아 최근 5년간 연평균 증여재산가액(5조 5,658억원)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

○ 실효세율(총결정세액/증여재산과세가액)은 최근 5년간 연평균 실효세율(11.8%)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

1) 증여세 납부세액공제는 수증자가 10년전 받은 증여재산까지 증여자산에 합산하여 과세하면서 증여 당시 부담한 기납부 증여세액에 대한 공제로, 향후 세율 조정에 따라 납부세액 역시 변화가 예상되나 이는 법 개정 이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 반영되므로 본 추계에서는 이를 반영하지 않음

❑ 개정안은 배우자 상속재산 비과세 및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워 동 추계에서 제외함

○ 배우자 상속재산 비과세는 배우자의 재산상속여부, 상속재산 가액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자료의 부재로 추계가 불가능함

○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의 할증폐지는 상속 및 증여하는 최대주주 등의 주식비율 및 가액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자료의 부재로 추계가 불가능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상속세 세율 조정

(1) 제도개요

❑ 현행 상속세의 세율은 1억원 이하 10%에서 30억원 초과 50%까지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

○ 현행 증여세 세율은 상속세 세율을 준용하도록 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되어 있어 상속세 세율 조정 시 증여세도 자동으로 연동

○ 개정안에 따른 세율 조정사항

[표 2] 상속세 세율의 현행 및 개정안 비교

현행		개정안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 1억원 이하	10%	~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1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20%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초과 ~	30%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30억초과 ~	50%		

(2) 추계방법

❑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조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는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대상자 수를 추정한 후, 이를 바탕으로 상속 및 증여재산규모별 1인당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세율조정안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세수효과 추계

○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대상자수는 최근 5년간 전체 피상속인수 및 증여자 가운데 과세 피상속인수 및 증여자의 연평균 비중을 적용하여 산정

○ 상속 및 증여재산규모별 1인당 과세표준에 세율조정안을 반영하여 산출세액을 산정하고, 여기에 세액공제액을 반영하여 결정세액 산정

○ 1인당 결정세액에 상속 및 증여재산규모별 과세대상자 수를 반영하여 세수효과 추정

(가) 과세대상자

❑ 상속세 과세대상 피상속인수는 최근 5년간 연평균 피상속인수(336,365명) 중 과세가 된 피상속인수의 연평균 비중(4.8%)을 적용하여 산정한 과세대상 피상속인(16,173명)이 향후에도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추계

○ 최근 5년간 전체 피상속인수의 증감추세가 일정하지 않아 향후 과세대상 피상속인수의 증감추세도 일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아 연평균 비중(4.8%) 적용

[표 3] 최근 5년간 과세대상 피상속인수 현황

(단위: 명, %)

구분	전체 피상속인수	과세 피상속인수	과세미달 피상속인수
2020년	351,648 (100.0)	10,181 (2.9)	341,467 (97.1)
2021년	344,184 (100.0)	12,749 (3.7)	331,435 (96.3)
2022년	348,159 (100.0)	15,760 (4.5)	332,399 (95.5)
2023년	292,545 (100.0)	19,944 (6.8)	272,601 (93.2)
2024년	358,979 (100.0)	21,193 (5.9)	337,786 (94.1)
연평균인원 / 연평균 비중 등	336,365 (100.0)	16,173 (4.8)	322,930 (95.2)

주: 1. ( )는 전체 피상속인수 대비 비율
2. 연평균 과세 및 과세미달 피상속인수는 연평균 전체 피상속인수에 과세 및 과세미달 피상속인수 연평균 비중을 곱하여 산정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증여세 과세대상 증여건수는 최근 5년간(특이치 제외) 전체 증여건수(연평균 511,549건) 중 과세된 증여건수의 연평균 비중(37.3%)을 적용하여 산정한 과세대상 증여건수(190,958건)가 향후에도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추계

○ 최근 5년간 전체 증여건수의 증감추세는 일정하지 않으며, 2021년 및 2022년 특이치를 제외한 3년간의 과세된 증여건수의 연평균 비중(37.3%) 적용

[표 4] 최근 5년간 과세대상 증여건수 현황

(단위: 건, %)

구분	전체 증여건수	과세 증여건수	과세미달 증여건수
2020년	461,800 (100.0)	183,499 (39.7)	278,301 (60.3)
2021년	800,109 (100.0)	275,592 (34.4)	524,517 (65.6)
2022년	711,875 (100.0)	252,412 (35.5)	459,463 (64.5)
2023년	530,004 (100.0)	208,508 (39.3)	321,496 (60.7)
2024년	542,843 (100.0)	178,660 (32.9)	364,183 (67.1)
연평균 건수 / 연평균 비중 건수 등	511,549 (100.0)	190,958 (37.3)	320,591 (62.7)

주: 1. ( )는 전체 증여건수 대비 비율

2. 2021년 및 2022년 특이치 제외

3. 연평균 과세 및 과세미달 건수는 연평균 전체 건수에 과세 및 과세미달 연평균 비중을 곱하여 산정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상속 및 증여재산규모 과세표준별 과세대상자

❑ 상속재산규모 과세표준별 과세대상자는 전체 추정 과세대상자(16,173명)에 최근 5년간 상속재산규모 과세표준별 과세대상 연평균 비중이 향후에도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추계

[표 5] 상속재산규모 과세표준별 최근 5년간 피상속인수 현황 및 향후 과세대상 추정

(단위: 명, %)

총상속재산 과세가액 규모	2020	2021	2022	2023	2024	평균 비율	과세대상 추정
1억원 이하	63 (0.62)	72 (0.56)	57 (0.36)	84 (0.42)	48 (0.23)	0.44	71
5억원 이하	376 (3.69)	409 (3.21)	426 (2.70)	551 (2.76)	338 (1.59)	2.79	452
10억원 이하	2,687 (26.39)	3,202 (25.12)	4,018 (25.49)	5,026 (25.20)	5,801 (27.37)	25.92	4,191
30억원 이하	5,619 (55.19)	7,219 (56.62)	8,955 (56.82)	11,066 (55.49)	11,694 (55.18)	55.86	9,034
50억원 이하	774 (7.60)	1,036 (8.13)	1,289 (8.18)	1,928 (9.67)	2,008 (9.47)	8.61	1,392
100억원 이하	449 (4.41)	532 (4.17)	677 (4.30)	850 (4.26)	839 (3.96)	4.22	682
500억원 이하	198 (1.94)	256 (2.01)	312 (1.98)	402 (2.02)	430 (2.03)	2.00	323
1,000억원 이하	9 (0.09)	14 (0.11)	15 (0.10)	22 (0.11)	21 (0.10)	0.10	16
1,000억원 초과	6 (0.06)	9 (0.07)	11 (0.07)	15 (0.08)	14 (0.07)	0.07	11
합계/향후 추정 과세대상	10,181 (100.00)	12,749 (100.00)	15,760 (100.00)	19,944 (100.00)	21.193 (100.00)	100.00	16,173

주: 1. ( )는 전체 피상속인수 대비 비율

2. 과세대상 추정은 향후 전체 과세대상에 평균비율을 적용하여 산정

자료: 국세청 답변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증여재산규모 과세표준별 과세대상은 추정 과세대상 (190,958건)에 최근 5년간 증여재산규모 과세표준별 과세대상 연평균 비중이 향후에도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추계

[표 6] 증여재산규모 과세표준별 최근 5년간 증여건수 현황 및 향후 과세대상 추정

(단위: 건, %)

총상속재산 과세가액 규모	2020	2021	2022	2023	2024	평균 비율	과세대상 추정
1억원 이하	97,369 (53.06)	136,135 (49.38)	135,330 (53.58)	113,868 (54.61)	97,134 (54.37)	53.01	101,228
5억원 이하	65,488 (35.69)	103,479 (37.53)	89,258 (35.34)	71,746 (34.41)	62,557 (35.01)	35.60	67,990
10억원 이하	14,344 (7.82)	25,979 (9.42)	19,157 (7.58)	15,842 (7.60)	12,730 (7.13)	7.91	15,107
30억원 이하	5,179 (2.82)	8,409 (3.05)	7,242 (2.87)	5,760 (2.76)	5,047 (2.82)	2.87	5,473
50억원 이하	469 (0.26)	644 (0.23)	695 (0.28)	626 (0.30)	555 (0.31)	0.28	525
100억원 이하	350 (0.19)	420 (0.15)	543 (0.21)	368 (0.18)	361 (0.20	0.17	331
500억원 이하	253 (0.14)	526 (0.19)	322 (0.13)	256 (0.12)	243 (0.14)	0.14	258
1,000억원 이하	17 (0.01)	83 (0.03)	24 (0.01)	13 (0.01)	18 (0.01)	0.01	25
1,000억원 초과	30 (0.02)	25 (0.01)	18 (0.01)	29 (0.01)	15 (0.01)	0.01	21
합계/향후 추정 과세대상	183,499 (100.00)	275,592 (100.00)	252,412 (100.00)	208,508 (100.00)	178,660 (100.00)	100.00	190,958

주: 1. ( )는 전체 증여건수 대비 비율

2. 과세대상 추정은 향후 전체 과세대상에 평균비율을 적용하여 산정

자료: 국세청 답변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다) 상속 및 증여재산규모별 1인당 과세표준 가액

❑ 최근 5년간 상속재산규모별 1인당 과세표준액의 증감이 일정하지 않아 각 상속재산규모별 1인당 평균 과세표준액 1억원 이하 0.3억원에서 1,000억원 초과 4,949.5억원이 향후에도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추계

[표 7] 상속재산규모별 1인당 과세표준액 추정

(단위: 명, 억원)

상속재산 과세 가액규모	2020			2021			2022			2023			2024			1인당 평균 과세표준
	피상속 인수	과세 표준	1인당 과세표준[2]	피상속 인수	과세 표준	1인당 과세표준	피상속 인수	과세 표준	1인당 과세표준	피상속 인수	과세 표준	1인당 과세표준	피상속 인수	과세 표준	1인당 과세표준	
1억원 이하	63	23	0.4	72	27	0.4	57	21	0.4	84	31	0.4	70	16	0.2	0.3
5억원 이하	376	587	1.6	409	661	1.6	426	722	1.7	551	953	1.7	446	672	1.5	1.6
10억원 이하	2,687	5,187	1.9	3,202	6,403	2.0	4,018	8,051	2.0	5,026	9,764	1.9	4,137	11,179	2.7	2.1
30억원 이하	5,619	31,253	5.6	7,219	41,572	5.8	8,955	41,572	4.6	11,066	64,051	5.8	8,918	68,035	7.6	5.9
50억원 이하	774	14,245	18.4	1,036	19,937	19.2	1,289	75,583	58.6	1,928	37,056	19.2	1,375	38,205	27.8	28.7
100억원 이하	449	17,290	38.5	532	21,070	39.6	677	26,975	39.8	850	33,984	40.0	674	32,983	49.0	41.4
500억원 이하	198	26,036	131.5	256	33,592	131.2	312	38,323	122.8	402	51,370	127.8	319	54,384	170.7	136.8
1,000억원 이하	9	5,228	580.9	14	7,420	530.0	15	8,337	555.8	22	12,860	584.5	16	13,102	816.1	613.5
1,000억원 초과	6	27,875	4,645.9	9	23,846	2,649.6	11	305,948	27,813.4	15	129,421	8,628.1	11	42,137	3,874.5	4,945.9[2]

주: 1) 1인당 과세표준액은 각 과세규모별 상속과세표준액을 피상속인수로 나눈 값
2) 1,000억원 초과 1인당 과세표준액은 2022년 특이치를 제외하고 산정
자료: 국세청 답변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최근 5년간 증여재산규모별 1건당 과세표준액의 증감이 일정하지 않아 증여재산규모별 1건당 평균 과세표준액 1억원 이하 0.3억원에서 1,000억원 초과 1,960.8억원이 향후에도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추계

[표 8] 증여재산규모별 1건당 과세표준액 추정

(단위: 건, 억원)

증여재산 과세 가액규모	2020			2021			2022			2023			2024			1건당 평균 과세표준
	증여 건수	과세 표준	건당 과세표준	증여 건수	과세 표준	건당 과세표준	증여 건수	과세 표준	건당 과세표준	증여 건수	과세 표준	건당 과세표준	증여 건수	과세 표준	건건당 과세표준	
1억원 이하	97,369	25,279	0.3	136,135	36,166	0.3	135,330	36,215	0.3	113,868	29,493	0.3	100,838	25,898	0.3	0.3
5억원 이하	65,488	105,981	1.6	103,479	173,522	1.7	89,258	152,346	1.7	71,746	123,038	1.7	67,728	104,146	1.5	1.7
10억원 이하	14,344	62,696	4.4	25,979	117,664	4.5	19,157	91,994	4.8	15,842	72,963	4.6	15,049	61,146	4.1	4.5
30억원 이하	5,179	68,239	13.2	8,409	105,997	12.6	7,242	96,268	13.3	5,760	76,490	13.3	5,452	67,474	12.4	12.9
50억원 이하	469	16,019	34.2	644	22,805	35.4	695	24,684	35.5	626	21,601	34.5	523	19,924	38.1	35.5
100억원 이하	350	23,998	68.6	420	29,570	70.4	366	23,953	65.4	368	24,804	67.4	330	23,970	72.7	64.6
500억원 이하	253	48,217	190.6	418	89,572	214.3	322	69,651	216.3	256	50,910	198.9	257	49,953	194.3	194.1
1,000억원 이하	17	12,297	723.4	83	51,963	626.1	24	17,023	709.3	13	9,124	701.8	25	12,059	486.2	649.3
1,000억원 초과	30	61,235	2041.2	25	50,627	2025.1	18	39,065	2,170.3	29	51,486	1,775.4	21	37,404	1792.3	1,960.8

주: 1인당 과세표준액은 각 과세규모별 증여과세표준액을 증여건수로 나눈 값
자료: 국세청 답변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라) 상속 및 증여재산별 1인당 세액공제액

① 상속세의 증여세액공제액

❑ 상속재산규모별 피상속인 1인당 증여세액공제액은 1억원 이하 3백만원에서 1,000억원 초과 166.6억원이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추계

○ 증여세액공제액은 상속재산규모별 전체 과세대상자 가운데 증여세액공제액을 적용받은 비중을 반영하여 추계

[표 9] 상속재산규모별 피상속인 1인당 증여세액공제액 추정

(단위: 명, 억원, %)

상속재산 과세 가액규모	2020			2021			2022			2023			2024			1인당 평균 공제액
	피상속 인수	공제액	1인당 공제액	피상속 인수	공제액	1인당 공제액	피상속 인수	공제액	1인당 공제액	피상속 인수	공제액	1인당 공제액	피상속 인수	공제액	1인당 공제액	
1억원 이하	27	0.7	0.026	20	0.7	0.03	20	0.6	0.03	41	1.5	0.036	3	0.1	0.04	0.03
5억원 이하	201	26.8	0.13	205	30.8	0.15	222	37.5	0.17	267	43.0	0.16	17	3.1	0.18	0.16
10억원 이하	927	270.1	0.3	1,023	309.0	0.3	1,104	301.8	0.3	1,430	414.5	0.3	1,762	532.9	0.3	0.3
30억원 이하	2,123	1,119.1	0.5	2,407	1,342.3	0.6	2,645	1,335.1	0.5	3,407	1,898.3	0.6	3,656	1,921.1	0.5	0.5
50억원 이하	447	566.4	1.3	582	797.8	1.4	676	898.1	1.3	1,029	1,219.5	1.2	1,072	1,344.3	1.3	1.3
100억원 이하	323	893.4	2.8	366	747.8	2.0	453	1,143.3	2.5	575	1,418.0	2.5	588	1,355.9	2.3	2.4
500억원 이하	157	1,398.5	8.9	208	1,681.4	8.1	231	1,899.3	8.2	304	2,706.8	8.9	347	3,180.9	9.2	8.7
1,000억원 이하	8	257.7	32.2	11	641.6	58.3	11	418.3	38.0	18	669.2	37.2	20	1,398.4	69.9	47.1
1,000억원 초과	6	511.7	85.3	8	1,031.0	128.9	11	3,204.7	291.3	15	2,272.2	151.5	13	2,289.6	176.1	166.6

주: 1인당 증여세액공제액은 각 과세규모별 증여세액공제 적용자를 전체 과세대상자로 나눈 값
자료: 국세청 답변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10] 상속재산규모별 증여세액공제 적용대상 비율

(단위: 명, %)

상속재산 과세 가액규모	2020			2021			2022			2023			2024			증여공제 적용비중
	전체 과세대상	공제 대상	비중	전체 과세대상	공제 대상	비중	전체 과세대상	공제 대상	비중	전체 과세대상	공제 대상	비중	전체 과세대상	공제 대상	비중	
1억원 이하	63	27	42.9	72	20	27.8	57	20	35.1	84	41	48.8	48	3	6.3	32.2
5억원 이하	376	201	53.5	409	205	50.1	426	222	52.1	551	267	48.5	338	17	5.0	41.8
10억원 이하	2,687	927	34.5	3,202	1,023	31.9	4,018	1,104	27.5	5,026	1,430	28.5	5,801	1,762	30.4	30.6
30억원 이하	5,619	2,123	37.8	7,219	2,407	33.3	8,955	2,645	29.5	11,066	3,407	30.8	11,694	3,656	31.3	32.5
50억원 이하	774	447	57.8	1,036	582	56.2	1,289	676	52.4	1,928	1,029	53.4	2,008	1,072	53.4	54.6
100억원 이하	449	323	71.9	532	366	68.8	677	453	66.9	850	575	67.6	839	588	70.1	69.1
500억원 이하	198	157	79.3	256	208	81.3	312	231	74.0	402	304	75.6	430	347	80.7	78.2
1,000억원 이하	9	8	88.9	14	11	78.6	15	11	73.3	22	18	81.8	21	20	95.2	83.6
1,000억원 초과	6	6	100.0	9	8	88.9	11	11	100.0	15	15	100.0	14	13	92.9	96.3

주: 1인당 증여세액공제 적용비율은 각 과세규모별 증여세액공제 적용자를 전체 과세대상자로 나눈 값
자료: 국세청 답변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② 증여세의 납부세액공제액

❑ 증여재산규모별 1건당 납부세액공제액은 1억원 이하 2백만원에서 1,000억원 초과 870.5억원이 유지된다고 가정하에 추계

○ 납부세액공제액은 증여재산규모별 전체 과세대상자 가운데 납부세액공제액을 적용받은 비중을 반영하여 추계

[표 11] 증여재산규모별 1건당 납부세액공제액 추정

(단위: 건, 억원, %)

증여재산 과세 가액규모	2020			2021			2022			2023			2024			1건당 평균 공제액
	건수	공제액	1건당 공제액	건수	공제액	1건당 공제액	건수	공제액	1건당 공제액	건수	공제액	1건당 공제액	건수	공제액	1건당 공제액	
1억원 이하	7,846	193	0.03	10,225	247	0.02	11,597	266	0.02	12,055	275	0.02	9,862	241	0.0244	0.02
5억원 이하	15,439	2,754	0.2	20,594	3,375	0.2	20,746	3,350	0.2	18,999	3,281	0.2	20,151	3,393	0.2	0.2
10억원 이하	4,867	3,217	0.7	7,516	4,813	0.6	6,560	4,212	0.6	5,868	3,926	0.7	5,767	4,138	0.7	0.7
30억원 이하	3,154	9,116	2.9	4,298	9,417	2.2	4,049	9,888	2.4	3,409	8,474	2.5	3,260	8,962	2.7	2.6
50억원 이하	319	2,476	7.8	495	3,771	7.6	508	4,389	8.6	481	4,338	9.0	433	4,215	9.7	8.6
100억원 이하	284	6,333	22.3	337	7,123	21.1	270	4,535	16.8	292	5,593	19.2	284	5,299	18.7	19.6
500억원 이하	225	16,988	75.5	401	34,972	87.2	267	20,007	74.9	227	15,652	69.0	206	14,925	72.5	75.8
1,000억원 이하	16	5,249	328.1	81	23,373	288.6	23	5,215	226.7	9	2,841	315.6	16	3,178	198.6	271.5
1,000억원 초과	29	25,421	876.6	25	20,477	819.1	18	16,569	920.5	28	20,882	745.8	15	14,862	990.8	870.5

주: 1인당 증여세액공제액은 각 과세규모별 증여세액공제 적용자를 전체 과세대상자로 나눈 값
자료: 국세청 답변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12] 증여재산규모별 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 비율

(단위: 건, %)

증여재산 과세 가액규모	2020			2021			2022			2023			2024			납부세액 공제적용 비중
	전체 과세대상	공제 대상	비중	전체 과세대상	공제 대상	비중	전체 과세대상	공제 대상	비중	전체 과세대상	공제 대상	비중	전체 과세대상	공제 대상	비중	
1억원 이하	97,369	7,846	8.1	136,135	10,225	7.5	135,330	11,597	8.6	113,868	12,055	10.6	97,134	9,862	10.2	9.0
5억원 이하	65,488	15,439	23.6	103,479	20,594	19.9	89,258	20,746	23.2	71,746	18,999	26.5	62,557	20,151	32.2	25.1
10억원 이하	14,344	4,867	33.9	25,979	7,516	28.9	19,157	6,560	34.2	15,842	5,868	37.0	12,730	5,767	45.3	35.9
30억원 이하	5,179	3,154	60.9	8,409	4,298	51.1	7,242	4,049	55.9	5,760	3,409	59.2	5,047	3,260	64.6	58.3
50억원 이하	469	319	68.0	644	495	76.9	695	508	73.1	626	481	76.8	555	433	78.0	74.6
100억원 이하	350	284	81.1	420	337	80.2	366	270	73.8	368	292	79.3	361	284	78.7	73.8
500억원 이하	253	225	88.9	418	401	95.9	322	267	82.9	256	227	88.7	243	206	84.8	84.3
1,000억원 이하	17	16	94.1	83	81	97.6	24	23	95.8	13	9	69.2	18	16	88.9	89.1
1,000억원 초과	30	29	96.7	25	25	100.0	18	18	100.0	29	28	96.6	15	15	100.0	98.6

주: 1인당 납부세액공제 적용비율은 각 과세규모별 납부세액공제 적용자를 전체 과세대상자로 나눈 값
자료: 국세청 답변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마) 상속 및 증여재산별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조정에 따른 세수효과

❑ 상속세 세율을 조정함에 따라 2026년 기준(신고기한 미반영)으로 상속세는 3조 1,591억원, 증여세는 1조 9,507억원 등 총 5조 1,098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 상속재산 규모별 과세표준에 개정안에 따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조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상속세 세수감소액은 100억원 이하 1조 968억원에서 100억원 초과 2조 622억원 등 총 3조 1,591억원으로 추계됨

○ 증여재산 규모별 과세표준에 개정안에 따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조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증여세 세수감소액은 100억원 이하 1조 955억원에서 100억원 초과 8,552억원 등 1조 9,507억원으로 추계됨

(3) 추계결과

❑ 상속세 세율을 조정함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는 2026년 3조 426억원, 2030년 5조 1,098억원 등 2026년에서 2030년까지 5년간 총 23조 4,818억원(연평균 4조 6,964억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 2026년 기준 세율 조정안에 따른 세수추계는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대상자 및 1인당 과세표준 등이 최근 5년간 증감추세가 일정하지 않아 연평균액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한 것으로 향후 5년간 동일

○ 2026년 세수효과는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기한 감안하여 추계

[표 13] 상속세 세율 조정에 따른 향후 5년간 상속세 및 증여세 감소액 추계

(단위: 억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누적	연평균
상속세 감소분	15,795	31,591	31,591	31,591	31,591	142,158	28,432
증여세 감소분	14,630	19,507	19,507	19,507	19,507	92,660	18,532
세수감소분 합계	30,426	51,098	51,098	51,098	51,098	234,818	46,964

주: 1. 현행 증여세 세율은 상속세 세율을 준용하도록 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되어 있어 상속세 세율 조정 시 증여세도 자동으로 연동
2. 2026년 세수효과는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기한 반영하여 상속세 6/12, 증여세 9/12 적용하여 산정

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 비과세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 비과세는 최근 5년간 연평균 배우자의 증여재산가액에 실효세율(11.8%)을 적용하여 산정

○ 배우자 증여재산가액은 2020년 4조 9,351억원, 2024년 4조 1,766억원으로 5년간 총 27조 8,292억원(연평균 5조 5,658억원)으로 나타남

[표 14] 최근 5년간 배우자 증여재산가액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누적	연평균
증여재산가액	49,351	75,957	60,596	50,622	41,766	278,292	55,658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 비과세에 따라 증여세는 2026년 4,930억원, 2030년 6,573억원 등 2026년에서 2030년까지 5년간 총 3조 1,224원(연평균 6,245억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 배우자의 증여재산가액 및 실효세율은 증감추세가 일정하지 않아 최근 5년간 연평균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한 것으로 향후 5년간 동일

[표 15] 배우자 증여재산 비과세에 따른 향후 5년간 증여세 감소액 추계

(단위: 억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누적	연평균
증여세 감소액 (증여재산가액×실효세율)	4,930	6,573	6,573	6,573	6,573	31,224	6,245

주 : 1. 실효세율은 최근 5년간 연평균 실효세율 11.8% 적용
2. 2026년 세수효과는 증여세 신고기한 반영하여 9/12 적용하여 산정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Ⅳ. 부대의견

❑ 없음

Ⅴ.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추계세제총괄과	최천규	권아영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최천규	02-6788-4653	choi1009@assembly.go.kr